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법 적용대상에 택시 및 도선 추가 〉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77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제2210577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적용대상에 도선 및 택시 추가(안 제2조 제2호·제3호·제5호)	2
2. 휠체어탑승 택시 도입 계획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추진(안 제6조 및 제 26조)	9
3. 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12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상에 교통약자 탑승 택시 추가(안 제16조의3 제2항제3호 신설)	16
※ 참고자료	20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221057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보운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5. 22.
3. 회 부 일 : 2025. 5.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교통수단에는 일반 대중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택시와 내수면 등에서 사람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선박(이하 “도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택시와 도선을 추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및 제3호아목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적용대상에 도선 및 택시 추가 (안 제2조제2호·제3호·제5호)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의 적용 대상에 도선과 택시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도선과 택시를 “교통수단”의 범위에, 도선장과 택시승강장을 “여객시설”의 범위에, 도선사업자와 택시운송사업자를 “교통사업자”의 범위에 각각 포함시킴으로써, 현행 버스·도시철도·철도·궤도·비행기·선박·광역철도에 추가하여 도선과 택시도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 「교통약자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제3호·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 바.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u><신설></u>	

현행	개정안
사. (생략)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 사. (생략) <신설> <신설> 아. (생략) 4. (생략)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행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 8. (생략)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u>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u> (이하 “택시”라 한다) 자. (현행 사목과 같음) 3. ----- ----- -----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u>유선 및 도선 사업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선장 자. 「<u>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강장차. (현행 아목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 ----- ----- ----- 「<u>해운법</u>」, 「<u>유선 및 도선 사업법</u>」 ----- ----- ----- ----- 6. ~ 8.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

현행	개정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 ----- ----- -----택시를----- ----- ----- -----.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3조1)에서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수단에는 일반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택시’, 내수면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도선’²⁾이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

포함되어 있지 않아³⁾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도선과 택시를 교통수단에 포함할 경우 도선 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현행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현행법 제9조~제12조)와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현행법 제13조),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현행법 제13조의2),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 의무(현행법 제17조) 등을 부담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준 등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정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참고1. 참조)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
5.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와 기수(汽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을 말한다.
- 3)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상 교통수단은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 궤도, 비행기, 선박, 광역철도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조(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따라서,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의 범위를 넓혀 교통약자에 대한 진정한 보편적 이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에 대해 택시업계는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으로 인한 유지·보수·수리비 및 손실금 등의 부담, 일반 좌석이 협소해지는 문제, 연비 하락에 따른 수익 저하 등을 우려하고, 도선업계는 사업자의 영세성과 내부공간이 협소한 소형 위주의 도선이나 급격한 수위변화가 있는 도선장의 현지 여건 상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을 갖추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교통약자는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설치 기준이나 이동편의서비스 기준 등은 각 교통수단별 차이점, 업계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과 적절한 재정지원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나. 관계 기관 등 의견

1)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현재 일반 택시는 휠체어 탑승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도선은 소형 위주로 운영되어 내부공간이 협소하고 사업자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휠체어 보관함, 장애인전용 화장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내수면 특히 댐호수는 계절에 따른 급격한 수위변화가 있는 등 도선장의 현지 여건상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용은 무리가 있음.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한국해운조합

도선은 선박 구조 등의 사유로 승선 시 폭이 좁은 트랩을 사용하거나 선박으로 바로 승선하며, 선박 내 이동통로의 폭이 좁아 휠체어 이동이 불가함.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출입문 확장 등 선박 개조가 필요하나 선박 재질이 강화플라스틱인 관계로 해당 선박 개조 시 선박 복원성 미충족 등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

도선장은 내·해수면 시설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선박 또는 간이 건물(컨테이너)에서 대표를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움.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를 교통사업자가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3) 전국택시운송사업종합연합회 및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으로 인한 유지·보수·수리비 및 손실금 등의 부담 발생, 일반 좌석이 협소해지는 문제, 연비 하락에 따른 사업자 수익 저하 등이 우려됨.

영세한 택시산업 환경 고려 시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은 사업자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고, 설치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지원되어야 함.

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택시와 도선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이를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공백이 존재했음. 특히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대중교통보다 택시 의존도가 높고, 도서·수상지역 주민들은 도선을 필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교통수단·여객시설·교통사업자에 도선·택시 관련 내용 추가가 필요함.

2. 휠체어탑승 택시 도입 계획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추진(안 제6조 및 제26조)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의 표준모델 개발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u>버스의</u> 도입에 관한 사항	5. ----- ----- <u>버스 또는 택시의</u> ----- -----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26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 -----

현행	개정안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u>버스의</u> 표준모델 개발 3. ~ 6. (생략) ②·③ (생략)	----- -----. 1. (현행과 같음) 2. ----- -----<u>버스 또는 택시의</u>----- -----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버스와 함께 대표적인 교통수단의 하나인 택시를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택시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봄.

다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계획수립에 관한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부칙 규정이 필요해 보임.

안 제6조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택시 도입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는 경우, 안 부칙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내용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립된 계획에도 적용되어 이미 수립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논의 결과를 안 부칙에 적용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립된 계획에도 적용할 경우에는 현행법 제7조제1항⁵⁾에서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지자체장도 5년 단위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수립된 지방계획의 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안 부칙에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안 제6조 및 제26조의 개정에 동의함.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제14조의3)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운송사업자에게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에 장착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버스 및 택시를-----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

현행	개정안
<신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3(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 ② ----- ----- -----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 -----. 제14조의3(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버 스 및 택시에----- -----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선버스, 도시철도 등 교통수단⁶⁾은 현행법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라⁷⁾ 법령에서 정한 종류와 기준에 맞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전세버스의 경우 현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나, 현행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서는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전세버스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음.

이에 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은 택시도 전세버스와 마찬가지로 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으로 봄.

다만, 개정안은 택시를 현행 전세버스와 달리 ‘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있어(안 제2조제2호)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는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만약 현행법 제10조와 그 하위 법령에서 택시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휠체어 탑승설비 등에 관한 규격·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은 개정실익이 없게 되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휠체어이용자 및 비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Universal Design 택시 확대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에 동의하며, 신설 기준은 전세버스 규정보다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임차택시 규정(현행법 제16조의28)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상에 교통약자 탑승 택시 추가(안 제16조의3제2항제3호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탑승한 택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	제1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2022. 1. 18.>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u><신 설></u> ③·④ (생략)	3. 택시(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택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장애인주차전용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은 중증보행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⁹⁾(현행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과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같은 조 같은 항 제2호)¹⁰⁾로 한정하고 있는데, 안 제16조의3에 따라

9)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1) ~ 3) (생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1) ~ 3) (생략)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주차전용구역에 주차가 허용되는 택시에 탑승하는 교통약자¹¹⁾는 보행 상의 장애 등 요건을 제한하지 않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허용범위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현행 대상보다 훨씬 넓게 인정됨.

둘째, 지자체가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운행하는 현행법 제16조의2제1항¹²⁾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그 외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교통약자의 자가용차량 등은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 간의 비례원칙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수가 많고¹³⁾, 목적지에 도착하면 하차하는 택시의 특성 상 주차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허용에 따른 실효성 크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1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3) 2023년 기준 1,586만명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 1

「교통약자법」 상 교통사업자에 대한 주요 의무 규정

의무 내용	근거 규정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육 의무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

의무 내용	근거 규정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 2.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여객승무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신설 2024. 1. 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의무 내용	근거 규정
	을 실시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통이용편의 서비스 제공 의무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